

제2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9.5.29.(수) / 기록관리혁신팀)

- ❖ 제2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내용 등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16:00~18:00
- (장 소)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회의실(316호)
- (참석자) 곽건홍(한남대학교),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종연(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 신유림(증평군청), 최규명(함안교육지원청), 최동운(한국국제협력단) 등 6명
- ※ (배석자) 연구협력과장, 혁신팀장, 법제팀장 외 담당자 2명

□ 회의 안건 및 진행

- (회의 안건)

안건명	소관부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설명	정 책 기 획 과
▴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안) 의견 수렴	연 구 협 력 과

- (진행 순서)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5:30~16:00	30'	▴ 회의 준비 및 위원 안내	
16:00~16:05	5'	▴ 개회 및 인사	간사위원
16:20~17:50	90'	▴ 안건토의 및 질의응답	전문위원, 안건 담당자
17:50~18:00	10'	▴ 마무리 말씀 / 폐회	간사위원

□ 주요 논의 사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 법률 개정과 연계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는?(○○○ 위원)
 - ⇒ 법 개정 추이를 보고 5월말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6월내로 장·차관 보고 후 8월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10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쳐 법령 입안을 완료할 예정임.(법제팀장)
- 기록관의 이상적인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인 기록관 체제를 탈피해야 하며 통합기록관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봄. 이번 개정안에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 간 통합기록관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제외된 이유는?(○○○ 위원)
 - ⇒ 교육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는 ‘교육지원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행정기관과는 조직의 성격이 다르므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 통합 등에 관한 논의는 교육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법제팀장)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필요 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 또한 실제 업무를 통합하여 거점교육청을 운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통합기록관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봄.(○○○ 위원)
 - ⇒ 부처 의견조회 과정에서 다른 교육청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령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법제팀장)
- 정부산하공공기관도 지부·지사별로 기록관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합기록관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렇듯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단위별로 논의해서 정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봄.(○○○ 위원)

- ⇒ 법령상에 설치해야 하는 단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그 안에서 통합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법제팀장)
- ⇒ 법령의 취지는 단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기록관 설치 수를 재량 하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하여 정할 사항은 아님. 다만 통합기록관을 설치할 경우 인력,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연구협력과장)
- 기록관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함. 제도를 바꾸면 1인 기록관체계가 문제인지 명칭만 기록관이고 존재가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지 설명이 부족함.(○○○ 위원)
- ⇒ 기록관 설치 규정 개정의 원인은 중앙과 특행은 각각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규모는 매우 크고 소속기관은 특별행정기관보다 규모가 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 상황에 맞게 기록관 설치 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법제담당자)
- ⇒ 기록관 규모 산정 시 인원 수, 처리과, 법령,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인력이나 처리 건 등으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위원)
-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봄. 개정의 방향은 좋지만 현 제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록관의 과제를 먼저 정확하게 논의한 뒤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해야 함. 현재 문제점은 기록관의 업무만 정하고 기타 기록관의 정의, 최소 규모 등의 사항들은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위원)

- 전문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및 기록관 설치기준 정의 부분은 실제적인 기록관 증감, 전문요원 확충에 대한 추산 및 논리 준비와 함께 진행하여야 함.(○○○ 위원)
- 수만 권을 생산하는 기관에 1인이 배치되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개정안이 필요함.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이 아닌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전문인력이 늘어난다고 전문요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임.(○○○ 위원)
- 기록관리 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소요시간을 계산해본 것은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폐기금지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같은 추가 업무 시간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워 보임.(○○○ 위원)
 - ⇒ 소요시간을 산정할 때 권당 발생 업무시간외의 업무시간을 고정 시간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제담당자)
- 폐기금지제도와 관련해서 협의의 대상이 재판, 수사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가기록원의 중립성이 훼손될까 우려됨.(○○○ 위원)
 - ⇒ 재판·수사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로 제한하여 국가기록원의 중립성을 보호하도록 함.(법제팀장)
 - ⇒ 폐기금지 제도에 대해 보충 설명하자면 무조건 폐기가 아닌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폐기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임. 폐기금지 요건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법제담당자)
- 폐기금지 제도가 기록물철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텐데 현재 개정안의 표현상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위원)
 - ⇒ 처리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단위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물철'로 표기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원)

-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중요기록물들이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 등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위원)
- 법령이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지 규제하기보다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위원)
- 채용부분에서 공감을 못하겠음. 기록연구사들이 기록관리 업무만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사·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된 해당 법령을 가져간다고 해서 기록연구사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음.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정량적으로 규정된 조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위원)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안) 의견 수렴]

- 책임성, 투명성보다는 증거로써의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국가기록관리보다 국가기록원이 비전·미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록, 아카이브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
- ⇒ 당초 국가기록원 비전·미션으로 기획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록관리 전반의 방향성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으로 설정함.(혁신팀장)
-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에만 표현이 국한되어 보임. 공공영역을 제외한 분야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위원)
- ⇒ 민간영역 포함할지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할지는 이견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주에 있을 기획단과의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임.(연구협력과장)

붙임

제2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 사진

